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상담신청 내용(접수번호: 상담-2022-4)

[신청정보]

- 상담 신청일자 : 2022년 9월 20일
- 상담 신청인 정보
 - 성명 :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 * 상담이송 및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 동의 완료(2022.9.26.)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국기원), 제공항목(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유·이용기간(10년)

[상담내용]

태권도의 승품, 승단 심사는 태권도법으로 #국기원 고유의 권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 관여된 단체는, ①국기원, ②대한태권도협회(심사위탁), ③17개시도지부(심사재위탁), ④동네 태권도장(심사신청)으로 최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동네 태권도장을 다니는 자녀의 태권도 심사비 안내 등을 담당하는 태권도장에서 그 비용을 청구함에, 현금지급(무통장입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상 태권도장에 무통장입금한 심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시, 심사비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라며, 발행 거부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승품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는, 국기원(참조(2) 국기원 승품단 심사수수료(발급수수료) 안내) 및 그 위탁기관에 지불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적 적용 사안이며, 지불한 비용중, ④태권도장으로 납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실 안내를 누락하고 있는 행태가 있습니다.

통상 태권도장에 납부되는 비용은 (1)주말특별훈련비, (2)증서 액자(케이스) 구입비, (3)도복띠 구입비, (4)인솔비 등으로 태권도장은 이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부한 비용 전체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용은

태권도장마다 상이하여, 통상 15만원 이상이며 이 비용은 태권도 학원 1개월 수강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 (1) 주말특별훈련비 : 사업장 직원이 근무외시간 투입하는 인건비를 납부자에 전가하고,
- (2) 증서 액자(케이스)구입비: 액자 등의 케이스 구매 희망 선택권도 없이 강매하고

최종,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증빙 처리하지 않아, 결국은 사업장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는 행태로 이해됩니다.

월 수강비가 낮아, 어쩔수 없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익히면, 당연(?) 승급 심사 코스를 밟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월 수강비를 인상하여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정책참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경험(참조(1) 태권도 승품승급 심사비 결제 증빙 및 결제 수단 개선 요구)을 담은 댓글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태권도장만의 문제가 아닌, 태권도계의 심사비 지불 관행, 개선 요구드리오니 긍정적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간 SNS 등의 게시물 작성 진행 시 만든 이미지를 첨부드리오니, (조잡하나)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 참조

(1) 온국민소통(舊,광화문1번가)

- 제안톡: 태권도 승품승급 심사비 결제 증빙 및 결제 수단 개선 요구
- 바로가기: <https://me2.do/GyyPQKap>

(2) 국기원

- 화면: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게시물: 국기원 승품단 심사수수료(발급수수료) 안내
- 바로가기: <https://www.kukkiwon.or.kr/front/kor/information/rule.action?cmd=View&seq=197&pageNum=1&searchKey=1&searchVal=>

[첨부파일]

#국민정책참여플랫폼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비가 무자료거래인 이유

무통장입금밖에 안된다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



태권도장 납입분

국기원 + 위탁기관

현금영수증 발행해야죠!

흔한 대화 오류 정정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 구성 항목

	지불비용	현금영수증
국기원	승품심사비	x
대한태권도협회	위탁수수료	x
17개 시도지부	재위탁수수료	x
태권도장	- 특별교육비 (영업실적) - 증서케이스 (강매) - 기타 경비(인솔비 등)	0

발행 요구 항목을 꼭! 짚어주세요!